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1억 2,474만 7천원
- 징수결정액 : 12억 887만 4천원
- 실제수납액 : 12억 883만 5천원
- 정리보류액 : 해당없음.
- 미 수 납 액 : 3만 9천원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107.5%(전년도 101.5%)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임.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계	1,124,747	1,208,874	1,208,835	-	-	39	107.5	99.9
일반회계	1,124,747	1,208,874	1,208,835	-	-	39	107.5	99.9
세외수입	297,262	381,389	381,350	-	-	39	128.3	99.9
경상적세외수입	280,091	280,622	280,622	-	-	-	100.2	100.0
이자수입	280,091	280,622	280,622	-	-	-	100.2	100.0
기타이자수입	280,091	280,622	280,622	-	-	-	100.2	100.0
임시적세외수입	17,171	100,475	100,436	-	-	39	584.9	99.9
보조금반환수입	17,171	94,960	94,921	-	-	39	552.8	99.9
시·도비보조금 등반환수입	16,721	8,727	8,688	-	-	39	52.0	99.6
자체보조금등	450	86,233	86,233	-	-	-	19162.9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반환수입								
기타수입	-	5,514	5,514	-	-	-	-	100.0
그외수입	-	5,514	5,514	-	-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	-	100.0
보조금	827,485	827,485	827,485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827,485	827,485	827,485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827,485	827,485	827,485	-	-	-	100.0	100.0
국고보조금	827,485	827,485	827,485	-	-	-	100.0	100.0

※ 결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2. 세출결산

- 당 초 예 산 : 80억 5,845만원
- 예 산 증 감 : 498만 3천원
- 예 산 현 액 : 80억 6,343만 3천원
- 지 출 액 : 75억 3,323만 6천원
- 이 월 액 : 1억 5,661만 2천원
- 집 행 잔 액 : 3억 7,358만 5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4.6%(전년도 5.2%)임.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만 4천원,
‘낙찰차액’ 2억 7,056만 6천원, ‘지출잔액’ 1억 298만 5천원임.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8,063,433	7,533,236	156,612	373,585	4.6%
일반회계		8,063,433	7,533,236	156,612	373,585	4.6%
사업예산		7,840,501	7,326,105	156,612	357,784	4.6%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403,218	389,350	-	13,868	3.4%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86,327	280,887	-	5,440	1.9%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116,891	108,463	-	8,428	7.2%
실효성있는 동원자원관리		40,560	40,526	-	34	0.1%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40,560	40,526	-	34	0.1%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2,215,993	2,201,279	-	14,714	0.7%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25,400	117,709	-	7,691	6.1%
	예비군 육성 지원	1,352,400	1,352,400	-	-	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6,100	34,550	-	1,550	4.3%
	시민 안보의식 함양	507,110	507,110	-	-	0.0%
	시민 안보 어울림 축제	190,000	184,527	-	5,473	2.9%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4,983	4,983	-	-	0.0%
사회복무요원 관리		368,030	323,428	-	44,602	12.1%
	사회복무요원 관리	368,030	323,428	-	44,602	12.1%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885,173	868,773	-	16,400	1.9%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000	1,000	-	-	0.0%
	민방위교육운영비	468,202	468,202	-	-	0.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4,225	24,225	-	-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9,883	123,180	-	6,703	5.2%
	민방위교육장 운영	261,863	252,166	-	9,697	3.7%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1,379,785	1,182,685	156,612	40,488	2.9%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23,575	23,575	-	-	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867,510	867,510	-	-	0.0%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488,700	191,600	156,612	40,488	8.3%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2,547,742	2,320,062	-	227,680	8.9%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547,742	2,320,062	-	227,680	8.9%
일반예산		222,932	207,131	-	15,801	7.1%
	기본경비	222,528	206,728	-	15,800	7.1%
	재무활동	404	403	-	1	0.2%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 변경

- 예산 변경은 총 1건, 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방위사령부와의 공동 주최 및 포럼 규모 확대(책자 발간, 전문가 섭외 등)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리멤버 1.21행사” 사업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비로 변경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498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북 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관련 법령 제정 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반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은 총 1건, 1억 5,661만 2천원으로 그 사유는 특수 사양 비상용품함 최초 맞춤 제작을 위한 업체 발굴(2개월) 및 계약심사 시 사업 성격 변경(용역→물품)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연내 준공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5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5개 사업에 8억 2,748만 5천원을 수령하여 8억 2,748만 5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비상기획관 관리 공유재산은
 - 건물 : 2,517.35 m^2 4억 5,660만원,
 - 기타(공작물) : 1건 3,252만 9천원,총 4억 8,912만 9천원 상당의 금액임.

〈 2025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천 원)

구 분		2024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89,129	-	-	489,129
행정 재산	소계	489,129	-	-	489,129
	공용재산	489,129	-	-	489,129
	공공용재산	-	-	-	-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139만 7천 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139만 7천 원 증가하여
 - 총 수량 108개, 현재액은 4억 6,568만원임.

〈 2025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illegible]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1억 2,475만원) 대비 107.5% 수납된 12억 883만원으로, 전년(6억 1,901만원) 대비 95.3%(5억 8,983만원) 증액함.

※ 징수결정액(12억 887만원) 대비 징수율은 99.9%임.

- 비상기획관 주요 임무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및 민방위 태세 구축 등 국가 비상 대비 태세 완비를 전략 목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주요 세입 과목은 국고보조금이 68.5%(8억 2,749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세입 결산 증감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대비		2024 결산액 (C)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D)	비율(D/C)
합 계	1,124,747	1,208,835	84,088	107.5	619,010	589,825	95.3
세 외 수 입	297,262	381,350	84,088	128.3	26,796	354,554	1323.2
경상적세외수입	280,091	280,622	531	100.2	6,210	274,412	4418.9
임시적세외수입	17,171	100,436	83,265	585.0	20,586	79,850	387.9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293	-
보 조 금	827,485	827,485	-	100	589,214	238,271	40.4
보 전 수 입 등	-	-	-	-	3,000	Δ3,000	Δ100.0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통계목별 징수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계	1,124,747	1,208,874	1,208,835	39	107.5	99.9
일반회계	1,124,747	1,208,874	1,208,835	39	107.5	99.9
세외수입	297,262	381,389	381,350	39	128.3	99.9
경상적세외수입	280,091	280,622	280,622	-	100.2	100.0
이자수입	280,091	280,622	280,622	-	100.2	100.0
기타이자수입	280,091	280,622	280,622	-	100.2	100.0
임시적세외수입	17,171	100,475	100,436	39	584.9	99.9
보조금반환수입	17,171	94,960	94,921	39	552.8	99.9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6,721	8,727	8,688	39	52.0	99.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50	86,233	86,233	-	19162.9	100.0
기타수입	-	5,514	5,514	-	-	100.0
그외수입	-	5,514	5,514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100.0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100.0
보조금	827,485	827,485	827,485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827,485	827,485	827,485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827,485	827,485	827,485	-	100.0	100.0
국고보조금	827,485	827,485	827,485	-	100.0	100.0

가) 세외수입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억 9,726만원) 대비 28.3%(8,409만원) 초과 징수된 3억 8,1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3.2%(3억 5,455만원) 증액된 수준임.

〈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대비		2024 결산액 (C)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D)	비율(D/C)
일 반 회 계	1,124,747	1,208,835	84,088	107.5	619,010	589,825	95.3
세 외 수 입	297,262	381,350	84,088	128.3	26,796	354,554	1323.2
경상적세외수입	280,091	280,622	531	100.2	6,210	274,412	4418.9
임시적세외수입	17,171	100,436	83,265	585.0	20,586	79,850	387.9
지난연도 수입	-	293	293	-	-	293	-

(1) 예산 대비 과다 세입 발생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금반환수입의 세부 과목별 수납 현황을 살펴 보면 세입 추계의 불일치가 심각하게 발생한바,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본예산(1,672만원) 대비 52.0%(869만원)만 수납되어 803만원의 부족 수납이 발생하였고,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본예산(45만원) 대비 19,162.9%(8,623만원)나 과다 수납되어 8,578만원의 초과 수납을 기록함.
-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서울시가 전년도에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받은 금액이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서울시가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임.
- 이처럼 보조금반환수입의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과도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집행부가 최근 2개년 평균 반환율(2.6%)을 기계적으로 적용 하여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을 과다 추계한 점과 비상계엄 등 대내외적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및 사업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따라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 오차율을 낮추기 위해 집행부는 보조사업 집행률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며, 보조금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사업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회계연도 중 세입원이 포착되어 실제 징수결정을 내린 시점에서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세입 예산 변경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20% 이상) 발생 과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보조금반환수입	17,171	94,960	94,921	77,750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6,721	8,727	8,688	△8,033	최근 2개년 평균 반환율 (2.6%)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반환금 발생액이 예상치를 하회하여 부족수납 발생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450	86,233	86,233	85,783	계엄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및 사업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증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1. 위탁사업 반환수입

(2)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551만원)과 “지난연도수입”(29만원)에서 세입 예산액 편성 없이 세입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비고
세외수입			2025	297,262	381,389	381,350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
	임시적세외수입			17,171	100,475	100,436	
	기타수입			0	5,514	5,514	
		그외수입		0	5,514	5,514	
지난연도수입				0	293	293	
	지난연도수입			0	293	293	
		지난연도수입		0	293	293	

- 이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의 경우 2024년도 연가보상비 오지급분에 대한 반납액이며, “지난연도수입”은 미수납되었던 체납세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 처리한 건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세입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실무적 한계가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향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80억 6,343만원) 대비 95.4%(76억 8,985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4.6%(3억 7,359만원)로 전년(75억 9,142만원) 대비 감소(전년도 5.2%) 하였음.
-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0.9%) 보다 높게 발생하였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예산	8,063,433	7,533,236	156,612	373,585	4.6
사업예산 계	7,840,501	7,326,105	156,612	357,784	4.6
일반예산 계	222,932	207,131	-	15,801	7.1

가) 예산의 변경사용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1천만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 중 서울시 안보포럼(연 2회 개최)의 ‘수도방위사령부와 공동 주최 및 포럼 규모 확대(책자 발간, 전문가 섭외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리멤버 1.21행사” 사업에서 1천만원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으로 변경사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리멤버 1.21 행사	행사운영비	5,000	5,000	-	-	-	-	-
	리멤버 1.21 행사	행사실비 지원금	5,000	5,000	-	-	-	-	-
	통합방위 협의회 등 운영	행사운영비	52,000	-	5,000	57,000	49,849	7,151	12.5%
	통합방위 협의회 등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0	-	5,000	5,000	4,460	540	10.8%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운영 형태로, 필요한 규모의 예산만 변경사용하여야 하나,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고도 변경사용액(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715만원)이 발생하였는바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의 ‘행사운영비’ 통계목의 경우, 변경 사용액(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715만원)이 발생함.

- “리멤버 1.21 행사”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은 당초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 필요성이 적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리멤버 1.21 행사”의 ‘행사운영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 후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변경사용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예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 형태로써, 면밀한 추계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사고이월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은 총 1건, 1억 5,661만원을 사고이월함.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97,100	156,612	0	156,612	0	40,488
일반회계			197,100	156,612	0	156,612	0	40,488
	민방위 대피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97,100	156,612	0	156,612	0	40,488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에 편성된 ‘지하철 환승역 비상용품함 제작(구매) 및 비치’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9,710만원이나, 당해 연도 실제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 비상기획관은 설치 공간 검토와 디자인 조율, 계약심사 변경 등 행정적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계약 의뢰 및 체결 일정이 연말에 이르러야 개시했다는 사유를 제출함.

〈 ‘지하철 환승역 비상용품함 제작(구매) 및 비치’ 사업 개요 〉

- 위치 :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73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및 교육장 2개소
- 규모 : 비상용품함 75개 제작 및 내부 비상용품 구매 / 대피시설 내 비치
- 기간 : 2025. 11. 26. ~ 2026. 1. 23.
- 총사업비 : 156,612,050원

-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의 준공(2026.1.23.)도 다음 연도로 순연하여 1억 5,661만원을 사고이월(1건) 처리했음.

※ 집행잔액(낙찰차액) 4,049만원 불용처리함.

- 「지방재정법」 제7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 제한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비상기획관은 사고이월 사유로 제작업체 섭외 지연 및 계약심사 변경 실시 등 사전절차의 지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일정의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이며,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73개소) 민방위 대피시설과 교육장(2개소)에 비치하는 비상용품에 대한 능장 계약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긴급 물자에 대한 부서의 추진 의지 결여로 사료됨.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결산검사의견서〉

◎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

- 비상용품함 제작 시 기초조사 및 업체 발굴 미흡으로 1.5억 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긴급 물자에 대한 부서의 추진 의지 결여로 판단됨.

- 상반기 내 조속히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하반기에 이르러 방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 일정 관리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11월에 이르러 계약이 지연 체결된 것은 비상 대비 인프라 구축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이월액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음.

- 향후 사업 추진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의 활용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시점부터 행정절차를 계획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전 준비 소홀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결산 결과 3억 7,359만원(예산현액 80억 6,343만원의 4.6%)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이 중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민방위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으로, 총 집행잔액의 54.5%(2억 346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

(단위: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행사실비 지원금	4,000	2,450	1,550	38.8	대통령선거 기간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 조치에 따라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을 미실시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함
시민 안보 어울림 축제	사무관리비	5,000	1,527	3,473	69.5	행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촉 위원 수당 적정 지급 등 운영비 감소 및 행사 유인물 제작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197,100	-	40,488	20.5	지하철 환승역 비상용품함 제작(구매) 및 비치 계약 낙찰차액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공공운영비	954,992	854,708	100,284	10.5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공공요금 납부잔액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	1,224,000	1,120,827	103,173	8.4	2025년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신설 사업 낙찰차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45,360	31,357	14,003	30.9	비상계엄령 발령에 따른 군부대 출입 통제 및 합동 일정 조정으로, 현장 출장 소요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방위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및 신설 사업’ 등과 관련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이고,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은 ‘지하철 환승역 비상용품함 제작(구매) 및 비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1,400만원)는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대 출입 통제 및 합동 일정 조정으로, 출장 소요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개선 없는 연례적 행정 운영을 반증하는 것으로, 특히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의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신설 사업’의 경우 2024년(1억 4,065만원)에 이어 2025 년에도 1억이 넘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 ‘국내여비’(출장비)는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부터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 ‘국내여비’ 집행 현황(통계목별) 〉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2025	기본경비	국내여비	45,360	31,357	14,003	30.9
2024			81,900	32,054	49,846	60.9
2023			40,320	19,941	20,379	50.5

라)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전후세대 안보견학 및 나라사랑 안보포럼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총 5억 711만원을 편성·지출하였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¹⁾」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507,110	507,110	-	-
시민 안보의식 함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43,110	243,110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1,000	61,000	-	-
	민간행사사업보조	203,000	203,000	-	-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12월
- 사업내용 : 전후세대 안보견학 등 4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507,110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계	243,110	
	전후세대 안보견학	203,110	
	재향군인회 안보교육지원	4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소계	203,000	
	나라사랑 안보포럼	180,000	
	6.25전쟁 기념행사	23,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계	61,000	
	재향군인회 운영비	61,000	- 인건비 : 59,800천원 - 회계검사비 : 1,2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1)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실적

- **전후세대 안보견학**(초·중·고교생 및 기업인, 4,113여명) : '25.4~12월
 - 서울함공원, 임진각전망대 등 전적지 안보견학 28회, 학교 내 안보교육 3회
- **안보교육지원**(초·중·고교생 및 안보단체, 1,130여명) : '25.4~12월
 - 찾아가는 안보교육 2개교, 전방 견학 및 전적지 탐방 4회
- **나라사랑 안보포럼**(안보단체, 시민, 현역장병, 1,215여명) : '25.4~11월
 - 안보현장(연평도, 1함대사령부, 독립기념관 등) 안보포럼 8회
-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참전용사, 안보단체회원 600명) : '25. 6. 20.
 - 안보특강 및 기념행사(서울시청 다목적홀) 1회
- **재향군인회 운영비** : '25.1~12월
 - 재향군인회 상근직원 인건비(6명, 12개월분) 및 회계감사비 지원

□ 예산집행 결과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A-B-C)	불용률(%)	불용사유
시민 안보의식 함양	507,110	507,110	-	-	-	-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별 운영 성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교부액 증감(%) - 전년 대비 -
2025	507,110	507,110	-	-	52,720 (11.6)
2024	454,390	445,025	9,366	9,366	220,580 (94.3)
2023	233,810	233,810	-	-	153,810 (192.3)

- 한편,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본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나라사랑 안보포럼 운영 확대, 전후세대 안보견학 참여 희망 학교 증가, 전문강사의 학교 방문을 통한 맞춤형 안보교육 실시,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일정한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프로그램의 다각화, 적극적인 홍보, 만족도 높은 콘텐츠의 도입, 차별화된 안보견학 및 강연 주제 등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본 보조금 지원 사업이 형식적 행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증가 규모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사무관리비’)

- 비상기획관 사업별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사무용 종이류’는, 당초 편성된 예산(112만원)보다 165만원이 많은 277만원(247.9%)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 초과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 ※ 행정장비수리비(152.8%), 소규모수선비(135.7%), 기타(사무용품·소포품 등) 665만원 순증
- “기본경비”의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²⁾에 반하는 무분별한 사무관리비 운영 행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기본경비		예산현액	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42,088		140,292	1,796
	기본사무용 종이류	1,118	○ 복사용지 등 종이류	2,772	△1,654
	소규모수선비	280	○ 수선비	380	△100
	행정장비수리비	5,040	○ 프린터 토너 구입비	7,702	△2,662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	25,680	○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인쇄 등	28,205	△2,525
	도서구입비	450	○ 도서구입	425	25
	급량비	90,720	○ 기본업무추진급량비	82,203	8,5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8,800	○ 교보재 및 훈련물자 등 구입 ○ 시청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매 ○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급량비	11,959	6,841
	기타	0	○ 사무용품, 소모품 등	6,646	△6,646

-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가 비록 기관 운영에 따라 일부 유연하게 집행될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예산액을 초과하는 과다 또는 과소 집행 행태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지침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김 대 인
------	-------	-------	-------